

제43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2)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7)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0)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4)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1)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6)
22.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8)
2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2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25.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26.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7)
27.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9)
2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9)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8)
3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1)
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3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0)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9)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9)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3)
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31)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5)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2)
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3)
4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5)
43.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2)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6)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5)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7)
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8)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8)
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9)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5)
5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6)
5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5)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9)
5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2)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4)
5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3)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9)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4)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6)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6)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3)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7)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9)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6)
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1)
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5)
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4)
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2)
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2)
7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6)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0)
73. 사망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0)
7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2)
75.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7)
7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2)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9934)
7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6)
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2)
80.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기범 외 50,29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2)
81.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김어진 외 50,0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0)
82.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장서연 외 53,7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1)
83. 업무현황 보고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농촌진흥청
 - 다. 산림청
 - 라. 한국마사회
 - 마. 한국농어촌공사
 -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농촌진흥청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2) 9
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5) 9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9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9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1) 9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9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9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2)	9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9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7)	9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2)	9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2)	9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8)	9
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9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7)	9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0)	9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4)	9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1)	10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6)	10
22.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8) ..	10
2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10
2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10
25.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10
26.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7)	10
27.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9)	10
2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9)	10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8)	10
3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1)	10
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10
3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10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0)	10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9)	10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9)	10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10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3)	10
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31)	10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5)	10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2)	10
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3)	10
4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5)	10
43.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2)	10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6)	10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5)	10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7)	10
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8)	10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8)	10
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9)	10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5)	10
5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6)	11
5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5)	11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11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9)	11
5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2)	11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4)	11
5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3)	11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9)	11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4)	11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6)	11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6)	11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3)	11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7)	11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9)	11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6)	11
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1)	11
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5)	11
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4)	11
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2)	11
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2)	11
7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6)	11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0)	11
73. 사망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0)	11
7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2)	11
75.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7)	11
7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2)	11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4)	11
7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6)	11
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2)	11
80.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기범 외 50,29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2)	11
81.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김어진 외 50,0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0)	12
82.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장서연 외 53,7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1)	12
83. 업무현황 보고	15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유튜브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배 위원님 사임하셨는데 보임하신 위원님이 안 오셔서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간사님과 김선교 간사님을 모시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이 어렵습니다. 농업·농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농업 그 선언들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민 전문위원.

구진희 입법조사관.

김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결산과 법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의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할 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과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오늘 예결위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불출석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은 건

강상의 이유로,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은 NH농협은행 뉴욕지점 현지 출장 등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양당 간사님의 양해하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농촌진흥청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2)
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5)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1)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2)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7)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2)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2)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8)
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0)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4)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1)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6)
22.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8)
2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2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25.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26.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7)
27. 한국한식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9)
2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9)
2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8)
3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1)
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3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0)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9)
3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9)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3)
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31)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5)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2)
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3)
4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85)
43.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2)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6)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5)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7)
4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8)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8)
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9)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5)

5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6)
5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5)
5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9)
5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2)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4)
5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3)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9)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4)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6)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6)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3)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7)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9)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6)
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1)
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5)
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4)
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2)
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2)
7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6)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0)
7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0)
7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2)
75.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7)
7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2)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4)
7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6)
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2)
80.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기범 외 50,29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2)

81.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김어진 외 50,0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0)

82.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장서연
외 53,72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1)

(10시15분)

○**위원장 서삼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9항까지 77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25회계연도 예산을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7개 회계와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와 기금을 합한 세입·수입 계획 총액은 27조 9280억 원이었으나 농특세 초과 수납 등으로 총 30조 336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 및 기금의 세출·지출 편성액 35조 1751억 원에 2024회계연도 이월액 1조 808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7조 1502억 원이었으며 이 중 96.1%인 35조 710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용역 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실집행 가능한 금액만 교부함에 따라서 일부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기금의 예탁금 축소 등 회계·기금 간의 내부거래와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834억 원을 편성하여 개식용 조기 폐업 농가의 폐업이행촉진금, 철거비 등을 지원하였고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5063억 원을 편성하여 산불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경기 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입·세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 시에는 이·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삼석 송미령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안전과 현장 애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농작업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한 병해충의 예찰·방제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힘썼습니다.

또한 밭농업 기계화와 AI 기반 농업로봇 등 첨단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치유농업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ODA와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해 K-농업 기술의 해외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46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보다 59억 원이 많은 2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615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109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2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311억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면밀히 살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승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식 산림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반영을 비롯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초대형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는 물론 금년도 봄철 산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와 탄소흡수원·산림복지 확대를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산림부문 세입·세출 결산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 2641억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31억 원이 많은 1조 277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3조 84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44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58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9146억 원을 지출하였고 150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과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대부분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삼석 박은식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게 됨을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 업무현황 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25분)

○위원장 서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각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는 마찬가지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률안,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결산 관련 서면 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 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 및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중요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및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시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성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 대한민국 최남단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범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관 업무보고 겸해서 하는 상임위는 저로서는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회의장에 첫 질의자로 선정해 주신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전이 있습니다만 저는 현안 문제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식품부장관님, 7월 말부터 8월 최근에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어느 지역이 특별히 좀 심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상남도·전라도·제주도 이렇게 세 지역이 심했고요. 가장 심한 건 아무래도 경남이었습니다.

○김성범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주 지역도 7월 중하순부터 8월 중순 지난번에 비가 올 때까지 많은 가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발생을 하면 위기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을 하잖아요. 논의 경우에는 논 저수지 저수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밭은 뭘을 기준으로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유효수분함유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60% 이하가 되면 관심을 발령을 하고 15% 이하가 되면 심각을 하는데 6월 말에 서귀포 지역이 관심 지역이었는데 제가 8월 2일 날 현장을 가 보니까 당근을 파종을 했는데 밭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말라 가지고. 1년치 파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2년치 생물이었던 더덕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수원 지역은 며칠에 한 번씩 제한 급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위기 단계는 여전히 관심 단계였다는 말이지요. 뭔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하면 보조지표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위기 단계가 발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게 유효수분함유율도 측정하는 게 말하자면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지역이 괜찮아도 내 밭은 이렇게 지금 말라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이제 양극단의 기후 이벤트가 계속 강화된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홍수도 강화될 거고 한편으로는 가뭄도 더 극심해지고 또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는 게 조그마한 지역 단위나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가 주도의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래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림부는 전국

적으로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여쭙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그다음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그거는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런데 지역별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의 특수성들이 있으니까.

○김성범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이려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대책을 그러면 시도한테 맡겨 두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통은 도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받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김성범 위원 그런데 국가 주도의 투자를 하려면 국가 나름의 계획이 좀 있어야지 그거에 기초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재정 당국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성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농업용수 계획을 세워 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국비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한 국비 투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거는 28년까지 끝나고요. 이후 후속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국비 투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리고 당장 27년에 급한 게 그중에 일부 준공된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급수를 착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한 7개소 내년에도 한 12개소 정도를 운영 예산만 있으면 조기에 급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걸 내년 가뭄 전에 기왕에 준공된 시설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범 위원 마지막으로 콩나물콩 보고 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받았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7월 말에 생산자단체하고 농림부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자라고 합의한 게 있는데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받았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것 철저히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협의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9월 9일 날 협의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예, 현장하고 소통 잘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범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농해수위로 보임해서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도 되었고 여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농협법 개정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나 감사기구의 완전 독립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서 잠깐 토론했고 다음 주에 다음번 소위에서 결론을 내보자 이렇게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과 제가 대체 법안을 냈습니다. 두 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중앙회의 조합원은, 중앙회의 회원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단위조합의 대표성을 완전 무시하는 정부의 직선제는 법률상 정합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농협의 개혁에 대한 정부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이분들의 그거를 간접선거든 김용태 위원은 대의원단 대의원 개념으로 조합원의 뜻을 물어서 조합장이 그 뜻에 따라서 투표하는 간접 방식으로 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조합장 뜻은 50% 반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로 하자 그래서 지금 중앙위와 또 정부와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했던 직접선거에 따른 비용도 해소하자 이런 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구도 법률적으로 기구를 독립하는 것보다는 중앙회 내에서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대안을 냈으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 야당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안만 고집할 경우 중앙회 농협의 단위조합이라든지 제가 농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정부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이 심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압박을 했기에 중앙회가 요즘 직선제 부분에서 큰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 측도 적극적으로 협상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 대해서 농지 투기 같은 것이 만연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농지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농지계획을,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 조사 대상인 각 지역의,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들어서서 아시겠지요.

농지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지 가격은 그나마도 저기 했는데 아주 바닥을 기고 있고 또 농협에서는 이 농지에 대해서 대출했는데 그 대출 원금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어서 농협이 지금 부실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부채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고 현실적으로 85세 된 농민이 직불금 등의 수령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농지를, 그냥 대손 마지기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지 전수조사한다니까 약간의 편법으로 임대차 등으로 활용돼 경작활동 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서 꽤 낙 상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목적을 살리더라도 이렇게 시작되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잘 찾으셔서 가지고 지금 시범 기본조사가 거의 끝나 간다는데 실질조사에서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투기 지역과 가뜩이나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농지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 홍성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군인데 축산군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스마트 축산 등 축산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는 다양한 환경 문제, 냄새라든지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홍성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1인 GDP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 축산업을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에 따른 피해로 아주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지자체에다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만 풀어 놓고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농민들의 지적 때문에 증식도 못 하고 스마트 축사로 전환하더라도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간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축산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산의 스마트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축산업을 어찌 됐든 그냥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축사 또는 축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농가와 구분하거나 공간구조에서 구분하더라도 실제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질의를 해 나갈 텐데 농림부에서도 각별히 이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계속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소 과장되게 정보 전달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태까지 농지법 도입된 이후에 농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것이 농지조사의 제1번의 목적입니다. 물론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지제도 자체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관행적으로 어긴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정을 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처벌하거나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중앙회가 여하튼 조합의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그것이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제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이것은 농협개혁추진단이나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장관님, 올해도 여지없이 가뭄이 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일부 지역은 해소를 넘어서 엄청난 피해까지 입었지만 또 일부 지역은 가뭄 해소, 해갈에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부지역 저수율 보니까 평년의 54%에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농림부의 업무보고 보면 현안에 여름철 재해 대응 해서 고강도 재해, 용수 부족에 대비해서 신규 수자원 개발, 수계 간 용수 연계 및 재해예방시설 확대 등 가뭄·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관님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등 재해, 기후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재정이 많이 수반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 농촌 다 망한 뒤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수지 준설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지하댐 건설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 준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우리 장흥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물을 그냥 다 빨아들여 가지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속으로,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지하댐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장관님 진짜 지금과 같이 세수 여건 좋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것, 똑같은 보고, 똑같은 대책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혁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듯합니다,

위원님. 당장 내년도 예산 작업부터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예산안 다 마무리돼 버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정말 특단의 대책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그 이야기도 했는데 위원님, 수로도 너무 개방식으로 되어 있고 예전 토수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수로 건설한 것도 오래돼서 금이 가서 누수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어촌공사와 함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되고.

지역에 가서 보면 저수지 저수율을 70%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탄력성 있게…… 그 지역은 제가 봐서는 거의 매년 가뭄이 되는데 비가 올 것을 가정하에 기존에 있는 물을 빼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찌겠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수율 70%를 유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을 뺀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가 아니고 장관님,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역별로 요즘에 데이터 과학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매년 데이터 다 뺀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수율 70%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해서 굳이 비 안 오는 마른 장마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율 지침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살수차량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지역들이 많은데 액비를 하는 차량들, 액비차량들이 살수차량으로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 겸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이런 것들도 총동원령 해 가지고 소방차량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장관님 MOU라도 맺든지 해서 업무체계를 갖춰 주시고 이분들이 지역에 자원봉사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정한 비용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농림부장관님 그것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수지 지하댐 계획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지침 70% 유지하는 것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지난 월요일 날 CPTPP 관련해 가지고 한국후계농하고 수산경영인총연합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하고 같이……

○문금주 위원 제가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피해 규모랄지 또 사전에 충분히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필요하다면 농해수 위원님들께도 사전 정보 제공을 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물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 CPTPP 사항에 대해서도 뭐랄까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농업 분야에 형식적으로, 농업 분야를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때로는 장관님 직을 걸어서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차례입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님, 저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예결위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농특세 관련해서 그리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 분야에 기본소득……

○**문대림 위원**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쓴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냐, 전입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었는데 지난 8월 21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여기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참석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참석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참석했었을 것으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문대림 위원** 이게 21일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농특세 증가분 활용 방안이나 농업·농촌 관련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봐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4일 입법예고된 내용, 이게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될 우려를 더욱 짙게 나타내는 법안이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농어업을 위한 별도 계정은 없지만 농어촌 지원이 지방계정의 여러 용도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을 보시면 제8조 2항 1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방계정 등은 다시 총괄계정으로 전출되거나 예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8조 2

항 제3호 및 4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총괄계정에 모인 돈은 다른 어느 계정으로도 자유롭게 전출하거나 예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원 명목으로 지방계정에 편성된 돈이라 하더라도 일단 총괄계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지는 않았고요.

○**문대림 위원**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28일까지 단 5일입니다. 이제 이를 남았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게 되면 정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보게 되면 사실상 편입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10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를 어떻게 농어촌 지역 발전이나 농어업 성장에 기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법안을 보게 되면 내국세 세입에 증권거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가분이 농특세로 이전이 되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게 미래대응기금 재원 명목으로 명확히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 총괄계정으로 한 번 세탁되고 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 법안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의 정확한 분석과 목적세인 농특세를 지켜 내기 위한 시도가 없다면 이거는 직무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농특세가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법안이 성안되는 동안도 협의를 안 하신 것 같고 20일 날 재정운용협의회도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입을 칼을 무는 심정으로 이 농특세 부분은 지켜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책임지겠습니다. 농특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목적세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 목적세가 세탁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이나 목적세의 정비—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그리고 미래대응기금 지출 포함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TFT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정 당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협의를 아니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께서 얘기했는데요. 재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발아율 80% 일괄적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품목별로,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고 생태 조건이 다르고 토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받아올 80%…… 재해 때문에 받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파
중은 했는데. 그런데 재해보험 가입을 정부나 그리고……

농협손보 송춘수 대표님 나와 있습니까? 어디 계시지요? 대표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농림부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 운영의
편익, 손해를 관리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특히 당근 받아올 80%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림 위원**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의견 수렴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조치하였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그 약속한 농가들이, 작년에는 8월 24일 기준 1558건의 보험 가
입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900건도 안 돼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그분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한 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 소통하고요. 이렇게 답변해서 지나가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농협손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 예.

○**위원장 서삼석**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균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저도 앞서 강승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농협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농협이 뭐의 줄임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농협 회원이 어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원사는 지역조합들입니다.

○**김용태 위원** 지역조합입니다. 한 1108개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재 1106개가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6개인가요?

법적으로도 현재 회원은 지역조합, 법인이겠지요? 다 법인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앙회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를 회원이 아닌 조합의 조합원이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생산자협동조합이고 그 생산자들의 구성이 또 지역조합인 것이고 지역조합의 연합 형태가 중앙회인 것이니까 어찌 보면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생산자, 조합원들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 장관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연히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고 개별 조합원이지요.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장관님 말씀처럼 정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고 그런 농협법을 개정하려면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 관련법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 조합원들한테 중앙회장 표결권을 주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강호동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김용태 위원** 강호동 회장님,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이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국제적으로 협동조합 관례 지금 딱 기억났을 때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지금 현재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고.

장관님, 협동조합 기본법 75조에 보면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을 지닌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하시는 생각이나 부처가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인데 그것을 하려면 새로운, 정말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을 출자하거나 그래서 회원이 될 수 있게 하거나 관련법이 개선돼야지만 가능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부처의 대안이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용태 위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CPTPP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국익을 위해서 CPTPP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민분들한테 충분한 지원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1조 원이라는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어쨌든 CPTPP 가입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장관님, 이러다 보니까 농민분들께서 ‘우리를 동네북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신데요. 장관님 임기 3년 동안 두 정부를 거쳐 오시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상생협력기금 부족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신 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상생협력기금이 민간 기업들의 자

발성에 기초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그 부분을 내도록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그 측면으로 그렇게 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상당히 잃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기금 부족분의 일반회계 전입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실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정부 책임 언급한 다음에 농림부의 대안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농민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AI 시대가 오면서 지금 사회에서 농민분들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거기에 비해서 농림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용태 위원** 농특세 언급이 좀 있었는데 농특세가 쓰인다면 어디에 써야 될지 우선 순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특세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그 농특세를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도 법률에 사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정하기보다는 농민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과도 의논드리고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 가지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산림자산 가치 고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산림청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라든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토론회에서 산림목재자원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토론회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산업 생태계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목재자원이 많이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수입 대체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재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유통·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을 좀 더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목조건축 이용 활성화법을 제정·추진 중에 있는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국산 목재가 건축재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재자원공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라든지 법령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홈플러스 재개장하고 나서 혹시 방문해서 농수축산물 구매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번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가신 것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가 홈플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해 국정감사와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의 말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던 농민들이 판로를 잃고 납품대금을 떼이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유통 공백이 대도시의 유통 독과점 구조도 심화시키고요. 또 국산 농수축산물의 판로가 크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사·분석을 해 봤어요. 올 들어 5월 말까지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액을 봤더니 2487억 원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을 봤더니 5721억 원입니다. 한 57% 정도가 줄었고요.

홈플러스가 아시겠지만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공백이 청과류 가격 하락도 부추겼고요. 또 우유 판매량도 급감해서 낙농업자들이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폐기량도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생산자 조직의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농협중앙회장님도 계시지만 올 7월 말까지 농협과 농협법인의 홈플러스 미수 금액이 303억 원과 또 759억 원 정도인 거고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납품대금 지급보증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날 홈플러스가 재개장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67개 정도 매장이 지금 재개장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가 재개장을 해서 많이 판매도 하시고 방문도 하십니다. 일평균 매출액이 80억 원대로 예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농축수산물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회복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지만 농산물 판매 실적은 정확하게 사실 이렇게 발라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휴업 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납품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홈플러스가 단순히 어떤 대형마트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큰 역할도 하고 농민들의 소득과 판로와 생산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이, 일단 기사회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고 완전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도 농식품부나 농협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분들께서 불편함이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무척 덥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어제도 보니까 열대야주의보에 여러 가지, 폭염주의보도 발령되고 그런데 농업인들이 특별하게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에 많이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현황을 봤더니요. 2021년에는 177명, 2025년에는 685명. 4년 동안에 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에도 보니까 이미 513명 정도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인들의 사망자가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사망자가 올해 31명인데 농업인이 8명을 차지해서 한 26%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폭염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나 그걸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책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이번에는 진흥청을 통해서 온열질환 예방요원 1100명 넘게 전국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고령의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대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다는 게 있고 해마다 아마 이런 이상기후나 폭염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기후위기가 있어서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 농촌, 농민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과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포항 남구·울릉의 이상휘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상휘 위원** 브라질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브라질이요? 예, 4단계입니다.

○**이상휘 위원** 단계별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8단계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지금이 4단계……

○**이상휘 위원** 브라질 같으면 연간 소고기 세계 최대 생산, 수출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350만t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6만t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규모인데 가격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히토류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걸 내어 주고 브라질의 수입 소고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소고기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검역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그 검역 협상은 그야말로 과학적 과정이라 지금 4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지금 실사를 하고 실사를 끝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고 실사하고 와서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쓰고 있는 단계라……

○**이상휘 위원** 쓰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그건 발표하지 않은 단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한참 걸립니다.

○이상휘 위원 한참 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브라질 수입 소고기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전체 시장의, 몇 퍼센트 증가할 거라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소고기 수입을 하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호주산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정치가 나와 줘야 축산업계도 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협의를 다시 또 해야 될 것인데 농림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추정치를 모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조심스럽지만 우리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경합하지는 않는다고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 간의 경쟁이지 우리 시장을……

○이상휘 위원 자료를 보니까 30% 정도 증가하게 되면 비육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송아지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 전체적으로 4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자료는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료는 저희 위원님께 방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입 소고기 시장 간의 경쟁이지 우리 한우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냉장육이 직접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CPTP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전체적인 시장 개방률이 만약에 개방되면 현재 90% 이상인데 거의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축산 쪽을 보면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 다 들어가 있던 말이지요. CPTPP가 가입이 된다고 그러면 축산시장은 거의 붕괴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CPTPP 같은 경우는 구조가 특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입을 위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가입 결정을 해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회원가입이 허가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양자 협상을 했던 방식으로 다시 회원국들과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로 60개국 그다음에 23건, 거의 다 시장에 내주고 있는데 CPTPP 같은 경우에 추가로 개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기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산자부가 보니까 CPTPP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시 발표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농림부가 여기 너무 밀리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부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22년도엔가 제가 알기로 CPTPP 논의를 했다가 한 번 좌절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 부처에서는 계속 논의를, 국내에서의 논의를 해서 가입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들은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이상휘 위원 산자부하고 교류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건에 관련돼서는……

○이상휘 위원 왜냐하면 농림부장관의 입장과 산자부장관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죠.

○이상휘 위원 거기는 수출산업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림부장관님께서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또 농업계의 입장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 농업계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농업계 전체가 불안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CPTPP 가입하
려고 그러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라는
건 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중국 가입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위원님. 그러나 전 세계가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든 상황들을 또 봐야지요.

○이상휘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CPTPP 가입하게 되면 농업 쪽에 피
해가 얼마며 여기서 얻어드릴 수 있는 이익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줘요.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안
줘요. 이 자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지요.

더군다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SPS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6개 회
원국까지 수산물 규제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SPS까지 같이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개방할
수밖에 없는 개별 대응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또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후쿠시마 수산물 SPS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상휘 위원 아무튼 현재 농업 피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추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얼마인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농업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 농
업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우리 농업계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단체들, 몇몇 단체 우리 지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를 중심

으로 해서 결산이니까 간략간략하게 문제 제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관리 관련해서 조작성 예산 있지요. 매년 부족해서 지금 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족한가 하고 쪽 살펴보니 보관비와 가공비 중에 단가들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 기준에 의해서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데 우선 보관료를 보면 t당 예산 편성 기준이 197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평균 지급 단가는 256원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실제 현재 대부분의 보관창고들이 저온창고입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다 보니까 훨씬 단가가 높은 거지요. 그래서 지급을 높은 저온창고 기준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성은 일반창고 197억 원 단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내년 예산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증액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관도 비슷합니다. 가공료도 A급 도정 공장 기준으로 보관료를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쌀들을 보관할 때 S급 보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RPC에서. 그래서 이 S급 도정 공장의 가공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옳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 운영은 64% 정도가 S급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매년 그 부족 예산을 다른 데서 털어 가지고 전용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개호 위원 또 비슷한 건데 대여곡 문제, 대여곡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작년 8월하고 금년 2월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15만t.

○이개호 위원 사상 처음으로 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처음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이 대여곡이 실제 운영이 됐는데 그 신청 자격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규모 신청 자격으로 해서 RPC 중에 3000t 이상을 취급하는 대규모에 지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중소형 RPC들인데 거기에는 전혀 혜택도 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대여곡을 시행을, 대여곡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양곡을 팔 때하고 풀 때 보면 시장질서만 굉장히 교란시킨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사업자들 얘기는 대여곡 제도는 신속하게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한테서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하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말씀 주신 대로 대여곡 제도를 처음 해 본 건데요. 이게 쌀 부족할 때, 원료가 부족할 때는 상당히 도움 줄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관세 이상 할 때는……

○이개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개호 위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수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볼지다마는. 하루에 65만t이 필요한데 대부분 잉여 생활용수를 활용해서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10만t을 나주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나주에서 10만t을 그쪽으로 돌렸으니까 또 농업용수 10만t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개호 위원 그것을 영산강 물을 인수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려면 용수료가 필요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대체 시설 차원에서.

○이개호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해당이 되시고 농촌진흥청장 소관이니까, 어디 계십니까?

전남 함평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에 대해서 요즘 주민대책위가 생겨서 이전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주민 이주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슨 직접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간접 보상을 해 달라 그래요, 각종 사업이나 또 정부 지원을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농림부에서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반드시 피해 보는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간접 지원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들어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밀리고 깨지거든요.

장관님, 꼭 좀 같이 상의하셔서 함평에 대한 그런 차원의 간접 보상,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함평군에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만……

○이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저한테 유리한 말씀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개호 위원 예, 하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1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저한테는 5개 가지고 왔던데 19개인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19건입니다. 그중에 도저히 안 되는 2건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얘기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신임 군수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2건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이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꼭 좀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 순서가 아닌 줄 알았더니만 순서가 되고……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승환 위원** 올해 추경이 얼마 편성됐지요, 증액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2차 합해서 50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8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그런가요?

○**조승환 위원** 8000억 정도.

그중에서 불용이나 이용된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추경 액수도 모르시는데, 3800억 정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조승환 위원** 아니요, 2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도, 25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승환 위원** 3800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만 제가 따졌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을 따졌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회계 안에서 움직인 것이라든지 사업 내에서 조정한 내역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편성의 기본원칙이 뭐니까? 그 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다, 추경 증액된 금액의 50%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작년 2차 추경 한 것이 이월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이고 1차 추경이고 2025년도에 추경을 했으면 202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국채 발행으로 추경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약 4000억 정도의…… 회계 내 이전이라든지 사업 간 조정 부분을 빼고도 50% 정도, 4000억 정도의 국민 부담을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사업내역을 따지고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4억을 증액했는데 한 푼도 못 썼어요. 본예산도 못 썼어요, 본예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소진 다 됐습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이월돼서 쓴 것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승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에서는……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을 추경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서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추경 편성할 때 농림부에서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사회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차관이—내가 지금 차관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그랬는데—7월 15일 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했던데 지금 뭐니까, 이것? 지금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8월 26일인데 지금 어떻게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조승환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승환 위원**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아마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마사회 회장님, 결정했습니까? 마사회 회장님!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지금 관련해서는 금주 내로 저희가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공모 내용 좀 주십시오, 이사회에서 의결할 공모 내용. 도대체 이 중요한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없이 무조건 9월 달에 하겠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마사회에서 7월 15일 날인가 이전계획 받아 온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승환 위원** 몇 개월 걸린다고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에서는 그때 상당한 오랜 기간, 이백몇 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예, 일반적인……

○**조승환 위원** 109개월인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에 완전히 매몰이 돼 가지고 지금 농림부는 마사회, 우리 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마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용역 준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차관은 무슨 근거로 7월 15일 날 ‘9월 중에 이전 대단지 공고하겠다’. 이게 경기도 안에서도 얼마나 이

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가 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마사회에서 제공한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이야기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국토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국토부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말이 지금 너무 주택공급이라는 데 매몰돼 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축산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농림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사회에서 공모한 것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추진을 했는데 12개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에 수급계약 체결 불가, 계통 공사 지연, 기본계획 변경 이런 식으로, 심지어 사업 포기한 데가 두 군데, 안 되고 있는 데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되는 데가 한 반수가 채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700개를 하겠다. 이것 제대로 조사되고 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에서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행안부의 추진단에서 지금 뽑은 것, 선정을 한 것이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600여 개 넘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것을 지금 700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올해 목표는 700개소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통 부분이나 지역주민 동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민들의 동의하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분명히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700개가 다 준비된 것이라고 지금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두고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장관님께 현안 관련해서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광주에 각화도매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각화도매시장. 35년 전인 91년 개

장했는데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서 올해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 신청했다는 데가 유일하게 한 군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잘 좀 선정을 해서,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다녀 보니까 아주 노후화 돼서 좀 그렇더라고요. 현대화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산림청장님께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뿔은감이나 머루나 다래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주철현 위원** 단감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농업부하고 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매실도 안 돼요, 머루·다래는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그게 농작물로 돼 있고 또 임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장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단감은 농산물이고 뿔은감은 임산물입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감은……

○**주철현 위원** 아니, 그래서 광양에 있는 매실이라든지 단감 농가들이 과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었는데 올해 농가들이 임야에서 재배하는 매실, 단감 이게 경영체 등록을 싹 다 말소해 버렸어요, 이것은 농지가 아니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빨리 해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 주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가지고요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지금 농가나 임가에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는 조치는 중단을 했고요. 조만간 더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되면 통보를 해서 바로 보완조치 취해 주셔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산림청장님께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중앙회장 직선제를 혁신과제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 개정안을 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아시겠지만 이미 연임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총회나 대의원회나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선제만 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조합장·중앙회장 직선제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림청 입장은 뭐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혁신 방안 마련할 때 저희 청도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기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발의가 이미 됐습니다. 빨리 좀 추진을 하십시오.

농협중앙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조합원 직선제,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론 여러 가지 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 제도 도입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재처럼 중앙회장이 정말로 권한이 뚜렷하지 않아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직선제가 되게 되면 중앙회장 연임도 허용해 줘야 되고 또 중앙회장의 권한을 이 산림조합중앙회장처럼 법에서 총회 의장도 되고 이사회 의장도 되고 대의원회 의장도 되고 소집권도 보장해 주고 이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장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도 지금 현재 법에서는 중앙회장 권한이 총회 대의원,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임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제가 한 4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물론 제 직책이 비상임입니다만—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여수시장을 4년 해 봤더니 시작하니까 끝나 버리더라고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작은 지방정부도 그러는데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농협중앙회가 10대 재벌그룹에 버금가는 거대한 자본 그룹 아닙니까? 이것을 4년 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선제 하면 당연히 중앙회장 연임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4년 해서 잘하면 한번 더 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차 요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직선제가 회장이 되는 만큼, 물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 장치도 필요하지만 또 조합원들의 충의를, 부담을, 요구사항을 떠안으려면 그만큼 권한이 실질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화할 수 있는……

1분만 더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 농협개혁추진단도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당연히 논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당장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농식품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러셔야지, 지금 일선에서는 직선제 해 가지고 외부감사제도 되어서 이게 농협중앙회를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면 정말 직선제 중앙회장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권한과 일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살펴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것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입장을 못 정하고 눈치만 보면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맡고 계신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산림청장님, 제가 지난 8월 19일 날 거제 폭우 피해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옥포동 아파트 사고를 산사태로 보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게 너무 복잡해요.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자연 상태 산림은 산림청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저 옆의 급경사면은 지자체에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옹벽은 국토부 관할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 뭔지, 어떤 사태로 규정할 거냐는 행안부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국민들은 지금 어디가 국토부 관할이고 어디가 지자체 관할이고 어디가 산림청 관할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종합적으로 산사태 예방대책을 내놓고, 옹벽 무너지니까 이것도 사유지 안에 있으니 이거는 국가재정 지원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돈 모아서 해야 돼요, 이번 옥포 보니까, 그나마 특별재난구역에 들어와서 그렇지.

저는 억울한 사실은 탓을 받으실 것도 같아요, 국민들은 다 산사태라고 생각하니까, 청장 관할도 아닌데. 그러면 저는 장관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관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를 만들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산림청이 무너짐이나 산사태는 갖겠다라고 하든 뭔가 조정기능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게 뭐예요, 저게? 자연산림은 산림청, 급경사면은 지자체, 아파트 옹벽은 국토부, 이걸 판정하는 것은 행안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산림청장님과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국민들 입장에서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장식 위원 아니요. 조금 시간이 제약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CPTPP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TPP 관련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후쿠시마산 식품 허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영국하고 이런 데는 CPTPP 들어가게 하면서 후쿠시마, 그러니까 지역별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구획화라는 걸 해서 어떤 특정 농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해성 입증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관리할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이것은 조금 걱정이 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CPTPP로 인해서…… CPTPP 제17장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관련 조항에 보면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국영기업 요건 충족 사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보고 있느냐, 마사회와 aT가 국영 조건 기존 회원국들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 마사회나 이런 쪽이 지정이 되면 축산발전기금 총 마사회에서 2098억 원, 연평균 670억 원 축산발전기금 내고 있는데 이거 지원 못 합니다. 아시지요? aT 같은 경우 TRQ 저율관세 할당 물량 통제하는 것 이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는 분명히 농식품부 관할에서 마사회와 aT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 상대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농식품부는 ‘전혀 우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우려 없는 것 맞나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 농식품부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사회와 aT에서도 이것 보고 계셔야 돼요. 이러면 농민들이 받게 되는 기금이나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리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살펴보고 대책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 협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부처 간 협의하셨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TPP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어떻게 할 건지 하고 CPTPP 제17장 관련해서 마사회와 aT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8월 6일 날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직접 다녀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20~30t 농수산물 버려집니다. 왜냐? 정온시설이 없어요. 정온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20t, 30t씩 버려집니다. 산지에서 더위에 작물이 상해서 버려지는데 와서 또 버려져요. 열 상자 받으면 두세 상자가 상해 버려집니다. 그러면 상인은 남은 일곱 상자로 열 상자값 받아야 본전 나오니까 농민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고칠 준비는 3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시설 현대화 사업, 20년 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하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 연구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있고 227억이면 된다, 경제성도 1.17이에요, B/C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22년째 한 톨도 안 갔어요, 강서도매시장에.

가락도매시장이란 비교를 해 봤어요. 가락이란 강서가 약 25%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3 대 1 정도로 유통이 되는데 강서에는 1조 2000억 시설 현대화 비용 들어갔어요, 아, 가락에는. 강서에 한 톨도 안 들어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도 돼요? 거기까지 좀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설자가 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신청하시면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기억하겠습니다. 신청 여부 제가 바로 확인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장 개설자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그다음에 걱정해 주신 CPTPP는 저희는 사실 마사회랑 aT가 국영기업이 아니다 이

요건을 가지고 봤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작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입법조사처 자료랑 달라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일본의 중앙경마회하고 일본의 유사한 중앙경마회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을…… 아무튼 포함해서 저희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정부 내 입장은 CPTPP를 만약에 가입 신청하더라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별개로 한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는 계속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농업계로서는 이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가입 신청을 위해서 논의가 공식화되는 경위라고 한다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우리 농업계의 피해와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산사태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디지털사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다가 해당되는 예보라든지 산사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관리했던 이번에 사고 났던 옹벽과 절토사면이 누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혼선은 지방정부에서 부서 간에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오해가 생겼는데요. 지금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장관님, 한 가지만.

이게 만약 하게 된다면 부속서에 aT와 마사회의 공익 목적 기금 출연, 식량안보, 물가안정 목적 등을 유보해서 등재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세심하게……

○신장식 위원 그리고 만약 그게 마사회나 aT가 아니다, 일본은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농림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농민들 편에 서는 농림부장관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아닙니다라는 저는 농림부장관님으로서 견지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회의 중간에 인사말씀 기회를 주시라는 양당 간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서삼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행정안전위원회, 약간 전투 상임위 같은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정보위원회 간사까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재정위로 배치되었는데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상황에서 옮겨 달라고 해서 어디로 가고 싶느냐고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얘기하기에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각별히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들 모시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저를 찾아 주신 이성권 위원님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과 특별히 관계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으면 질의 순서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바로 합니까?

○위원장 서삼석 예.

○이성권 위원 장관님, 처음 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전반기 때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후반기에는 농림 분야, 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PP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바로 시키는 바람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셨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분업체의 가격담합……

○이성권 위원 예, 제분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서 나왔는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가격이 몇 % 상승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표에는 74%……

○이성권 위원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74%입니다. 거의 배 가까이 급증을 특정 시기에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19라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의 차원으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뒀습니까? 담합으로 났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성권 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픈 대목이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식품업체들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관리의 책임으로 봐서는 좀 아픈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성권 위원 그다음 PPT를 보시면 이게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심각했습니다.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보면, 소비자물가를 한번 보시지요. 물가가 2019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보면 엄청 많이 오릅니다. 밀가루는 138%, 국수는 154% 이렇게 오르지요. 그런데 이 시기가 딱 담합의 시기였어요. 이걸 농식품부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국제 밀 가격의 추이와 소비자물가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교차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2년 2분기 때 국제 밀 가격이 가장 정점을 찍었거든요. t당 394불이었지요. 그렇지요? 그 이후로 국제 밀 가격은 계속 내려요. 그런데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고 있어야 되지요? 움직였어야 되지요? 움직였습니다.

한번 페이지 보시지요.

2023년 12월에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직접 현장도 방문해요. 장관님도 가셨지요, 2024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CJ제일제당.

○이성권 위원 CJ제일제당 가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 담합을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현장에 장관님과 주무부서의 담당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가서 주로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을 내려 달라고만 했지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책임은 저는 농식품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을 보면 이 시기입니다, 담합의 시기에 농식품부가 제분업체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47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합니다. 담합된 업체들에 해요. 그다음에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을 6000억 넘게 지원합니다.

세상에, 국민들은 이 제분업체들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업체들에게 담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농식품부에서는 그 담합 업체들에게 아주 넉넉한 금융지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이것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식품업계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나…… 뭐랄까, 당근과 채찍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저희들이 가격을 올리지 마셔라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채널만 있지, 사실은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공정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매달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원재료와 그다음에 식품 회사들 간의 연결 속에서 물가관리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밖에 저희들

이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뼈아픈 대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고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한테도 영향을 안 미치게 잘 관리를 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30초만 좀 더……

○문금주 위원 특별히 1분 쓰세요.

○이성권 위원 1분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채찍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가져 갑니다. 그래서 채찍이라는 수단을 조직 내에 구축할 것이냐고 고민해 봐야 되고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왜냐하면 담합에 의한 결과의 희생은 전부 국민이 지는데 국민이 피해를 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상이 안 이루어지지요. 단 한 명도 빼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위가 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바꾸어야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부의 채찍을 쓰는 방식을 포함해서 공정거래위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삼석 이성권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이니까 2025년도 한 해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서면질의를 수반하니까요 서면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아, 그런 게 예산 집행 과정에 있었구나’ 하는 점들을 간부님들이 챙겨서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장관님께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편성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가입률 20% 수준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니까 예산의 58.8%가 내역 변경을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 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2025년도에 신규 반영을 했는데 실행행률이 2.7%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지적 있으셨습시다만 2022년 회계년부터 매년 대규모 예산 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정부양곡관리사업비, 조작용리비, 가공료 이게 단가 문제에 기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상 온실가스 감축 핵심사업이라고 우리가 추진했던 축산·저탄소 직불 예산 70%를 전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창 민원이 있어서 바이오차도 확인해 보니까 사업추진 일정하고 봄작물 영농 시기가 불일치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 결산을 보면 선행절차 끝나지 않은 시설 사업, 공사비 무리하게 편성했다가 집행도 못 하고 타 사업으로 대거 돌리는 구태가 반복되는 사업. 이게 문경 국립산림레

포츠진흥센터 또 강릉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자체에 2025년도 임도시설 계약 84.6%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임도 부설시공하고 연관성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지방정부 방제율 61.9%. 협력체계가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농업진흥청,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GPS·통신·수신 불량, A/S 유지보수 대응 미흡, 방제·제조 로봇 성능 결함.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조속히 결산을 반영해서 예산편성부터 반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PTTP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와 관련된 내용 제대로 책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피해예상액 4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 그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지고 보면 1000억씩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확장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입장이 달라서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대통령 지시해서 부족분 7000억 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농식품부의 입장은 미온적인 걸로 느껴집니다.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의 입장에서 예전의 사례 제대로 반영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가입도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까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된 내용 중앙회장님께 질의도 하고 장관께도 질의하셨는데, 농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배치될 문제가 있으니 선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법과는 무관하게 농협중앙회법과 관련된 입법적인 내용을 했으면 좋겠고.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 회원회 회원이 될 수 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률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 입법 정책의 문제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것은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농특세와 관련된 내용, 활용…… 물론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 할 때 농특세는 대응기금 세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세수 증가에 대한 내용은 농민들에게, 농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재원 체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농협이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엇그저께 65주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5주년 행사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조합원이 출자한 것은, 조합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조합원의 자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모르세요?

경영등록체인가 그걸 가지고 3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 자격이……

○김선교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한 돈이 정부 돈입니까? 농협의 그 옛날 65년서부터 차근차근, 그때 농지 세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거기서 출자를 해 가지고 푼푼이 모아 온 돈입니다.

그런데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마음대로 했어요. 조합원이 선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농협감사위원회를 외부 독립법인을 뒤편에 뒀다, 정보 공개,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된다 등등 해 놨어요.

이것 공청회 한번 하자는데 왜 이렇게 못 합니까? 이런 거 정부에 조합원들 데려다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그래서 그것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마사회장님, 국토부장관이 공급 규모를 7만 3000가구인가 늘린다고 얘기 했어요, 용산은 제외를 시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과천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그중에 청년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는 재건축·재개발을 상당히 선진국다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다워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과천 주민들 시민들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과천 경마장을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왜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식발을 하게 되고, 그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이번 심의할 적에 그런 것들 다 상정에 올라갑니까?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예, 저희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무조건 옮기려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과천이 돼야 됩니까?

회장님, 한번 그건……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현재 이전은 경기도 내라고 저희가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요, 경기도 내인데 그러면 경기도 내에 청년주택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 좀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예, 청년들은 어쨌든 일자리가 가까운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것 잘 좀…… 그것 과천 시민들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요?

○**한국마사회장 우희종**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플래카드도 아주 지겹도록 많이 달아 놓고.

축사시설현대화개선사업 담당하는 국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예, 여기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불용액·이월 해 가지고 집행액이 아주 저조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저희는 이월을 해서 그래도 한 80%까지……

○**김선교 위원** 저조하지요?

○**위원장 서삼석**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김선교 위원** 중지 좀 시켜 주세요.

우리 지역에 축산 가축분뇨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돼 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나 가지고, 한 3km 이상 이렇게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아파트 주민이고 뭐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 보고 이런 가용 재원이 있으면 그런 데 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저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그것 지자체에 떠맡기지 말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이재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약속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 청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오늘은 회의 전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질의를 5분으로 마치는 걸로 약속이 됐었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꼭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님은 없으시답니다.

(웃음소리)

김선교 간사님.

없으신 걸로 알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청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9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주철현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선교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장식 위원님도 포함해 드립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 또 경호 담당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의원실 보좌진과 각 당 수석전문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회의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현황 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승규 김선교 김성범 김용태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신장식 윤준병
이개호 이상휘 이성권 조승환 주철현

○출장 위원(1인)

이재관

○청가 위원(1인)

강선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김종구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대변인 변상문

감사관 주원철

정책기획관 홍인기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비상안전기획관 이창희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식량정책관 정혜련

축산정책관 이재식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농식품인재개발원

원장 정용호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국립중자원

원장 양주필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김상경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방혜선
농촌지원국장 노형일
기술협력국장 최광호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김병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조용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센터장 정명갑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임영석
국제산림협력관직무대리 송원영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산림보호국장직무대리 박영환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산림교육원
원장 최은형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김만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 김명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이종수
서부지방산림청
청장 김인천
중부지방산림청
청장 정연국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센터장 김영훈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센터장 이광원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김용관

국립수목원장

원장직무대리 최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장 김일숙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중

상임감사위원 윤병현

미래전략본부장 배광석

경영지원본부장겸말산업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부회장겸고객서비스본부장 이병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

감사 윤소하

부사장겸기획전략이사 조영호

기반사업이사 김우상

수자원관리이사 최현수

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 전종화

부사장 김창국

수급이사 이재욱

수출식품이사 전기찬

유통이사 기운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전무이사 박서홍

상호금융대표이사 윤성훈

감사위원장 박종학

조합감사위원장 김병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 김주양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이찬우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박병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보고사항】

○위원 선임 및 개선

사임위원	보임(선임) 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배	이성권	국민의힘	2026. 8. 6.

○의안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2)

7월 30일 회부됨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1)

7월 31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8)

이상 3건 8월 3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9)

8월 4일 회부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2)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2026. 8.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2)

이상 5건 8월 5일 회부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2)

이상 4건 8월 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2)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8)

8월 10일 회부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8)

8월 11일 회부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0)

8월 12일 회부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8)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1)

이상 4건 8월 13일 회부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6)

이상 2건 8월 14일 회부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94)

8월 18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이상 2건 8월 24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6)

이상 2건 8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4)

이상 2건 8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이상 2건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1)

8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3)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8)

7월 2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5)

7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7)

8월 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1)

8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이상 2건 8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임시회의록